

#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48,129,839	19,443,895
일반회계	593,665,448	17,809,963
특별회계	54,464,391	1,633,932
공기업특별회계	48,292,558	1,448,77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3,150,252	994,508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142,306	454,269
기타특별회계	6,171,833	185,155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776,592	53,298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285,251	68,558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783,160	53,49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26,830	9,80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8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7년 명시이월 사업은 붙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98,22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